

수원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14256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14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221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탈퇴)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창영, 정원, 마상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피고, 피항소인 1.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이진우, 최경창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최예진

변론 종결 2021. 11. 5.

판결 선고 2022. 2.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22100 판결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승 계 참 가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아래에서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21,572,664,280원과 그 중 16,127,693,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44,970,61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2017. 2. 12. 및 2017. 8. 11. 각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관리대장상 피고 E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승계참가취지

피고 조합은 원고승계참가인(아래에서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21,572,664,280원과 그 중 16,127,693,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44,970,61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2017. 2. 12. 및 2017. 8. 11. 각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관리대장상 피고 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5,444,970,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 사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2017. 2. 12. 및 2017. 8. 11. 각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관리대장상 피고 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나. 참가인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5,444,970,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 사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2017. 2. 12. 및 2017. 8. 11. 각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관리대장상 피고 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16,127,693,670원 및 5,444,970,610원과 각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 지급 청구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16,127,693,670원과 그 자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참가인이 각 5,444,970,610원과 그 자연손해금 지급 청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참가인의 5,444,970,610원과 그 자연손해금 지급 청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조합에 대한 Q 관련 금전 청구

피고 조합은 2015. 7. 24. Q와 3차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18.부터 2017. 11. 3.까지 Q로부터 기채금 5,444,970,61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Q는 피고 조합에 5,444,970,610원 상당의 기채금 채권(아래에서 '제2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고자 2017년 3월경 Q와 3차위임계약에 따라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제2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제2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Q는 2017. 6. 15.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0. 9. 17. 원고들로부터 제2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들은 2020. 9. 21.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5,444,970,610원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 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 2채권의 채권자인 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대장의 피고

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제2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2채권의 존재 여부 가) 을 제25, 54,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Q가 2016. 3. 10.부터 2017. 11. 3.까지 피고 조합의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3,690,54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조합이 Q에 2015. 11. 3.부터 2016. 12. 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3,000,000원을 기채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가 피고 조합에 지급한 693,690,540원은 피고 조합이 Q에 지급한 92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제2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1>

2015. 11. 03.		5,000,000
2015. 12. 30.		10,000,000
2016. 01. 18.		13,000,000
2016. 02. 02.		23,000,000
2016. 02. 16.		20,000,000
2016. 02. 29.		35,000,000
2016. 02. 29.		12,000,000
2016. 02. 29.		3,000,000
2016. 03. 10.	50,000,000	
2016. 03. 11.		52,000,000
2016. 06. 23.	175,000,000	
2016. 06. 24.		30,000,000
2016. 06. 29.	50,000,000	
2016. 06. 29.	50,000,000	
2016. 06. 29.	50,000,000	
2016. 06. 29.	50,000,000	
2016. 06. 29.	40,000,000	
2016. 06. 29.		50,000,000
2016. 06. 30.	30,000,000	

2015. 11. 03.		5,000,000
2016. 06. 30.		50,000,000
2016. 07. 04.		10,000,000
2016. 07. 07.	40,000,000	
2016. 07. 15.		10,000,000
2016. 09. 12.		10,000,000
2016. 09. 30.		500,000,000
2016. 10. 28.		70,000,000
2016. 12. 02.		20,000,000
2017. 06. 07.	50,000,000	
2017. 07. 31.	60,000,000	
2017. 08. 03.	23,690,540	
2017. 09. 18.	22,000,000	
2017. 11. 03.	3,000,000	
합계	693,690,540	923,000,000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Q가 피고 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5,867,970,610원[= <표 1> 기재 693,690,540원 + 아래 <표 2> 기재 5,174,280,070원]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2019. 5. 29.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기채금 내역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출한 사실, 그 내역에는 Q가 피고 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기채금이 5,867,970,610원이고, Q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423,000,000원으로 기채금 잔액이 5,444,970,61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4,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Q의 피고 조합 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각 입금내역의 입금 명의자는 각 'AO', 'G', 'AJ', 'AK', 'AP', 'AQ', 'AR', '(주)AS', '피고 회사', 'AT(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Q가 아닌 제3자가 입금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입금 명의자들이 Q를 대신하여 위 각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2>

1	2015. 09. 18.	20,000,000	AO
2	2015. 09. 25.	20,000,000	G
3	2015. 10. 06.	5,000,000	G
4	2015. 11. 03.	30,000,000	AJ
5	2015. 11. 27.	250,000,000	AK
6	2016. 01. 26.	200,000,000	AP
7	2016. 01. 29.	200,000,000	AQ
8	2016. 02. 03.	50,000,000	G
9	2016. 03. 28.	100,000,000	AR
10	2016. 08. 02.	700,000,000	(주)AS
11	2016. 08. 05.	100,000,000	(주)AS
12	2016. 09. 30.	200,000,000	피고 회사
13	2016. 09. 30.	1,000,000,000	피고 회사
14	2016. 09. 30.	1,000,000,000	피고 회사
15	2016. 09. 30.	275,283,000	피고 회사
16	2016. 09. 30.	252,108,150	피고 회사
17	2016. 09. 30.	263,087,000	피고 회사
18	2016. 10. 11.	277,921,730	피고 회사
19	2016. 10. 11.	30,880,190	피고 회사
20	2016. 11. 17.	100,000,000	피고 회사
21	2017. 09. 27.	100,000,000	AT(주)
합계	5,174,280,070원		

다) 오히려 을 제57,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J은 2018. 6. 14. 피고 조합에 'AJ이 2015. 11. 3. 30,000,000원을, 2015. 11. 27. 지인인 AK을 통하여 250,000,000원을 피고 조합에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현재까지 위 각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AJ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2018년 11월경 AU(주)에 양도하고, 2018. 11. 30. 그 양도사실을 피고 조합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AU(주)가 2019. 2. 26. 피고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2621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주)AV[(주)AS의 변경 후 상호이다]는 2017. 10. 16. 피고 조합에 '당사가 피고 조합에 2016. 8. 2. 700,000,000원, 2016. 8. 5.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변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표 2> 4번, 5번 기재 금액 합계 280,000,000원은 AJ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표 2> 10번, 11번 기재 금액 합계 800,000,000원은 (주)AV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Q의 기채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을 제60,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 2> 6번, 7번, 12번 내지 21번 기재 금액 합계 3,899,280,070원은 AP, AQ, 피고 회사, AT(주)가 체비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 조합 소유 자산인 체비지 매각대금에 불과할 뿐, Q의 기채금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제2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정적 판단(채권양도 유효 여부)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치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2017년 3월경 Q와 사이에 Q가 3차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사업시행대행권과 체비지양도청구권,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비용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제2담보계약을 체결하고, Q가 2017. 6. 15.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0. 9. 17.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Q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과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 모든 권리, 권한 및 지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2020. 9. 21.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 조합과 Q 사이에 2015. 7. 24. 체결된 3차위임계약 제8조 제1항은 'Q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단, 피고 조합의 서면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양도금지특약을 두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나 참가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2담보계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Q 사이에 체결된 제2담보계약은 제3조에서 '권리양도의 통지 및 승낙'이라는 제목으로 'Q는 원고들로부터 이 계약에 따른 담보대상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조합에 대한 통지 및 승낙서 징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담보대상권리의 근양도담보권설정에 관한 통지서를 피고 조합에 확정일자부로 통지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담보대상권리의 근양도담보권설정에 관한 확정일자부 승낙서를 징구하여 원고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제2담보계약에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승낙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제2담보계약에 날인하였던 점, ③ 제2담보계약은 3차위임계약에 따라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도 Q와 제2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3차위임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제2담보계약 당시 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설령 제2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Q로부터 원고들에게 제2채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2008. 7. 31. G와 사이에 G가 1차위임계약에 따라 설립 전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제1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설립 전 조합이 2008. 8. 5.과 2008. 11. 17.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승낙한 사실, 이후 피고 조합이 2009. 11. 5. 그동안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이 2017. 2. 7. G와 사이에 제1채권을 환지계획인가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17. 환지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제1채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체결한 사실, G는 2017. 6. 14. 원고들과 사이에 제1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조합이 2017. 8. 11. 환지계획인가를 승인받은 사실, 참가인이 2019. 12. 26. 원고들과 사이에 G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과 각 대출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 권한 및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2020. 9. 21.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거쳐 제1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참가인에게 제1채권 금액인 16,127,693,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4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피고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인 피고 조합이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채권자인 참가인은 피고 조합의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피고 조합의 채권자인 (주)AW은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0411호로 피고 조합을 채무자,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6.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②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제7조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 등 자금을 관리하되, 그 자금의 집행순위는 '1순위 제세공과금, 분·부담금 및 피고 회사의 신탁보수, 2순위 이 사건 사업 경비, 3순위 설계·감리비, 4순위 시공사의 공사비, 지연손해금, 5순위 시공사의 공사비(기성율 기준), 6순위 차입원리금, 7순위 기타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추진 제경비,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의 용도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지만, 이러한 신탁재산은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되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렵고,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 사유, 기타 신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참가인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채권자들도 신탁재산의 운용 상태를 확인·감시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로서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제2채권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무신

판사심연수

판사유현종

별지